#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11 발의연월일: 2024. 7. 22

발 의 자:이만희·이인선·배준영

박정하 • 이종욱 • 백종헌

이달희 • 박형수 • 박성민

강선영 · 정점식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(2023. 4. 27. 시행)됨으로써 범죄예방,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.

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4조

의2 신설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·공유 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·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·조건 및 절 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·사용·양여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 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14조의2(국유·공유 재산의 대
	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
	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
	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	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와 중
	앙회등에 「국유재산법」 또는
	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
	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
	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・
	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
	는 사용하게 하거나 「공유재산
	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
	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
	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
	중앙회등에 국유 · 공유 재산 또
	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· 사용
	•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 • 조건
	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
	· 사용 · 양여하려는 자와 해당
	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
	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.